

# 한·미 FTA 식품분야 협상동향

The Progress of the KORUS FTA Negotiation in the Field of Food Industry

정 현 출

Hyunchul Jeong

농림부 자유무역협정 2과

Free Trade Agreement Division 2, International Agriculture Bureau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6월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시작했을 때의 긴장감이 바로 엊그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데 벌써 5차 협상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순의 6차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협상을 시작하던 때에는 2006년 말까지는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예정보다는 협상의 진행속도가 더디어 2007년에도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농업계에서는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고, 일부 농업인은 지금도 협상 자체에 강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외개방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한·미 FTA를 계기로 하여 어떤 여건 하에서도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농업계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공식적으로 또는 사석에서 만나본 식품업계 인사들은

식품의 원료가 되는 기초 농산물이나 식재료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에는 그리 큰 거부감은 없었으나, 최종 제품의 경우 이미 관세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세를 가능한 한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한미간의 식품산업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물론 정부도 식품산업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협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왔다.

## 한·미 FTA 협상 경과

지난 12월 초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린 제 5차 협상까지 한·미 양국은 중요한 협상쟁점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가 매우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협상을 출범 시키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짧고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낮은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에 쉽게 동의하기는 힘들다.

농업분야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그동안 한·미 양국

Corresponding author: Hyunchul Jeong, Free Trade Agreement Division 2, International Agriculture Bureau,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88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427-719, Korea  
Tel: +82-2-500-2032  
Fax: +82-2-503-7274  
E-mail: hyunj@maf.go.kr

은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상현안점검회의나 검역관련 정례회의, 기타 WTO의 다양한 협상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입장이 나온 것은 없었으며, 우리 대표단은 마치 여러 번 경기를 해 본 상대를 링 위에서 만난 권투선수처럼 조심스러운 태도로 협상을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은 외교통상부에서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의 범위가 경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수준이기 때문에 각 분야로 세부협상은 17개의 분과와 2개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소관 정부 부처가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업분과와 검역 및 위생(SPS) 분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있으며, 원산지, 상품, 서비스 등 관련 분과의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분과 협상은 협정문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양허 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농업분야 협정문은 일반 상품과는 별개로 농산물의 교역에 대해 특별히 적용하는 원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양허안 협상은 양국의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부품목별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세를 어떻게 인하 또는 철폐할 것인지에 관한 것을 협상하는 것이다.

6월과 7월의 1~2차 협상은 협정문에 집중하면서 양측이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이번 협상에서 농업계 및 정부가 가진 기본적인 입장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주로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면서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측은 우리가 가진 농산물 수입쿼터(TRQ) 관리방안이 복잡하므로 이를 단순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3차 협상을 앞둔 8월 15일 양측이 품목별로 작성한 양허안을 서로 교환하고, 9월 초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측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한 예외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미측은 원칙적으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양허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제4차 협상으로 이어진 품목별 양허안 논의를 통해 양측은 당초 제시한 양허안에서 다소 덜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한 안을 제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의견의 접근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민감한 품목에 대한 입장 차이는 큰 상황이다. 제5차 협상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양허안 수정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한편 4차 협상에서는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고 양측의 초안을 기초로 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는데,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이나 발동기준 등 세부 사항과 TRQ 관리방식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식품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식품분야는 전반적으로 현행 관세수준이 신선 농산물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식품업계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설탕, 대두유 등 식품 업계에서 특별히 민감하다고 강조해 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꾸준히 강조해왔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식품분야에 대한 영향이 어떨 것인지는 물론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종료될 것인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을 할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증가 및 국내 생산에 대한 피해가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정부도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감성을 협상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품질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특히 최근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품질에 대한 강화 노력이 다각도로 진전되고 있다. HACCP, PL법 등이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것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국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대외 개방 확대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일부 식품 종류는 신선도가 중요한 것이 많아 장거리 운송이 어렵다는 유통상의 특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의 경우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산의 수입 확대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또한 미국산의 수입량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국내 생산량을 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제3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특성과 협상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식품류에 대한 양허방향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설정하되, 최종 양허방향은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쪽으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100% 관철하기는 어려우나 미국도 설탕 등 특정 식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품목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주요 식품에 대해 양허에서 완전히 제외

한다는 식의 대안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다른 농산물과의 형평성 및 농업분야 전체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식품 전반을 무조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보다는 그 경중을 가려서 차별화한 대응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쿼타를 활용하는 방안, 관세를 인하하되 그 이행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보호효과가 높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면밀한 협상대안을 작성하는 한편으로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대외개방 심화에 대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수개월간 협상이 중단되었던 DDA 협상이 최근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TA가 협정 체결 당사국간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협상인데 비해 DDA 협상은 WTO 회원국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인하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은 한미 FTA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속히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